

강원도립대학교 교수 업적평가 결과활용에 관한 규정

(제정) 1999-12-06 규정 제067호

(개정) 2009-06-15 규정 제209호

(개정) 2010-01-28 규정 제219호

(개정) 2010-05-03 규정 제240호

(개정) 2016-04-25 규정 제397호

(개정) 2020-07-15 규정 제549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강원도립대학교 교수 업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9조의 평가 결과 활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 <개정 2016.4.25.>

제2조(평가결과의 적용) 평가결과는 교수의 재임용, 재계약, 승진임용, 승진계약임용, 정년보장 심사 및 성과급 연구보조비 지급 시 심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 <개정 2009.6.15.>

제3조(재임용·재계약 기준) 재임용·재계약 기준은 강원도립대학교 인사관리규정을 따른다. <개정 2009.6.15., 2010.1.28., 2016.4.25.>

제4조(승진임용 및 승진계약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기준) 승진임용·승진계약임용·정년보장임용의 기준은 강원도립대학교 인사관리규정을 따른다. <개정 2009.6.15, 2010.1.28., 2010.5.3., 2016.4.25.>

제5조(성과급 연구보조비 지급기준 활용) 성과급 연구보조비는 전 학년도 업적 평가 결과에 따라 평점순에 의거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, 등급 및 이에 해당하는 점수는 총장이 정한다.

제6조(산학협력중점교수 실적평가 활용) 산학협력중점교수(지정형) 활동실적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따로 정한다. <신설 2020. 7. 15.>

부칙(1998. 6.12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규정) 1998학년도에 임용된 교수의 1998년도 평가점수는 1999년도 교수업적평가 시 평가하여 적용하되, 교육활동은 1999년 실적을 동일하게 활용한다.

부칙(2009. 6.15.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0. 1.28.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0. 5. 3.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6. 4.25.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549호, 2020. 7. 15.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